

제341회 정례회
2015.7.14. (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7. 14 (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6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7월 3일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한 펀드에 출자하기 위함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설명(안 제2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기금의 관리·운용 중 투자조합 출자금 추가(안 제5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금
- 기금의 지원대상자 추가(안 제6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신선기)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해 펀드에 출자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현황과 기금 운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있는”으로, “이를 효율적으로”를 “효율적으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건축허가등”을 “건축허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이하 ” 기업진흥원 “라 한다)” 란” 을 “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이하 “기업진흥원” 이라 한다)” 이란”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새로” 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16.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17. “한국벤처투자조합” 이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예탁”을 “예탁(豫託)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의하며”를 “따르며”로, “관해”를 “관하여”로 한다.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내”를 “충청북도 내”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충청북도내”를 “충청북도 내”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따라지원대상자”를 “따라 지원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중”을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중”으로, “영위”를 “경영”으로, “필하여야”를 “마쳐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계 법령에 의거”를 “관계 법령에 따라”로, “공장등록을 요하지”를 “공장등록이 필요하지”로 한다.

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1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3.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 14. 한국벤처투자조합

제7조 중 “때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물자도입을 할” 을 “물자를 들여 올”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때의” 를 “경우의”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사용등” 을 “사용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중” 을 “기금 중” 으로, “각호” 를 “각호” 로, “이를 사용할” 을 “사용할”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차보증금” 을 “임차(賃借)보증금”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기구등” 을 “기계기구 등” 으로, “대체소요자금” 을 “대체에 드는 자금”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연구개발 소요자금” 을 “연구개발에 드는 자금”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요되는” 을 “드는” 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위해 소요되는” 을 “위한” 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위해” 를 “의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중” 을 “기금 중” 으로, “이를 사용할” 을 “사용할”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중” 을 “기금 중” 으로, “각호” 를 “각호” 로, “이를 사용할” 을 “사용할”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중” 을 “기금 중” 으로, “이를 사용할” 을 “사용할”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중” 을 “기금 중” 으로, “각호” 를 “각호” 로, “이를 사용할” 을 “사용할”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을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중” 을 “기금 중”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이를 사용할” 을 “사용할”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사용할” 을 “사용할”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 부터 제7항 각호” 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각 호” 로, “단체등” 을 “단체 등” 으로, “기금에 서” 를 “기금에서” 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항 부터 제9항 각호” 를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각 호” 로 한다.

제10조 중 “이를 공고하여야” 를 “공고하여야”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에 의한” 을 “제11조에 따른” 으로, “때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적격여부 검토를 거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제13조에 따른” 으로, “거쳐” 를 “마친 후”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각1명” 을 “각 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자로” 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명” 을 “의원 1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자” 를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제13조4항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기하기 위해” 를 “도모하기 위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해”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촉” 을 “위촉 해제”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허위에 의하여” 를 “거짓으로” 로, “환수” 를 “환수(還收)” 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보고등)” 을 “(보고 등)” 으로, 같은 조 중 “기관등” 을 “기관 등”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매회계연도마다” 를 “회계연도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매회계연도마다” 를 “회계연도마다”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을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p>	<p>-----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 ----- --.</p>
<p>5.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p>	<p>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 -----.</p>
<p>6.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 건축허가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p>	<p>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 건축허가 등----- -----.</p>
<p>7.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p>	<p>7.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 -----.</p>
<p>8.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p>	<p>8.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p>
<p>9.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이하 ”기업진흥원“라 한다)”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p>	<p>9.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이하 ”기업진흥원“ 이라 한다)”이란-- ----- -----</p>

현 행	개 정 안
<p>63조 및 충청북도 조례에 <u>의하여</u>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p> <p>1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이란 「<u>중소기업창업 지원법</u>」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전환·협동화·물류 현대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1. (생략)</p> <p>12. “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 「<u>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p> <p>13.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따라</u> -----.</p> <p>10. ----- 「<u>중소기업창업 지원법</u>」 제2조에 따라 새로----- -----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 -----.</p> <p>11. (현행과 같음)</p> <p>12. ----- 「<u>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2조제6호에 따라 -----.</p> <p>13. (현행과 같음)</p> <p>14. “<u>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u>”이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u>중소기업창업 지원법</u>」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p> <p>15. “<u>신기술사업투자조합</u>”이란 「<u>여신전문금융업법</u>」 제41조제</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신설></u></p>	<p><u>3항에 따라 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u></p> <p><u>16.“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u></p> <p><u>17.“한국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u></p>
<p>제3조(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① (생략)</p> <p>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 -----.</p>

현 행	개 정 안
<p>③ (생 략)</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u>각호</u>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2. (생 략)</p> <p>3.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u>」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용자금</p> <p>4. <u>기타</u>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용자상환금</p> <p>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u>매 회계연도마다</u>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 ----- <u>각 호</u> -----.</p> <p>1. ~ 2. (생 략)</p> <p>3.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u>」 제63조에 따른 ----- -----</p> <p>4. <u>그 밖에</u>----- -----</p> <p>② ----- ----- <u>회계연도마다</u> -----.</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생 략)</p> <p>② 기금은 다음 <u>각호</u>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p> <p>1. ~ 7. (생 략)</p> <p><신 설></p> <p>③ 기금 중 여유자금은 「<u>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u>예탁</u>하여야</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각 호</u>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금</p> <p>③ ----- 「<u>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u>예탁(豫託)</u>---</p>

현 행	개 정 안
<p>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용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u>경우에는</u>----- ----- -----.</p> <p>④----- -----<u>경우에는</u>----- ----- -----.</p> <p>⑤ 제4항에 따른 ----- -- <u>따르며</u>, ----- <u>관하여</u> ----- -----.</p>
<p>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1. <u>충청북도내</u>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p> <p>2. ~ 10.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p>	<p>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 --<u>충청북도 내</u>----- ----- <u>제4조에 따라</u> --- ----- -----.</p> <p>1. <u>충청북도 내</u>----- -----</p> <p>2. ~ 10. (현행과 같음)</p> <p>11. <u>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u></p> <p>12. <u>신기술사업투자조합</u></p> <p>13. <u>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u></p> <p>14. <u>한국벤처투자조합</u></p> <p>② ----- <u>제1항에도</u>---</p>

현 행	개 정 안
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별 성격에 따라지원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다.	---- 제5조제2항에 따른 ----- ----- 따라 지원대상자-----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 자중 중소기업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공장등록이 의제 되는 자는 공장등록을 요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용자대상자 중 ----- 경영----- -----마쳐야 ----- 관계법령에 따라 ----- ----- 공장등록이 필요하지 -----.
제7조(자금의 조달 등) 도지사는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 의 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물자 도입을 할 수 있다.	제7조(자금의 조달 등) ----- ----- 경우에 는 ----- 따라 -- ----- 물자를 들여 올 -----.
제8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 연금 및 용자금) ① (생략) ② 기금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 금으로부터 출연 또는 용자받을 때 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 자금관리기금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용자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우 의 ----- -----.
제9조(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중 중소	제9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현 행	개 정 안
<p>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자금은 다음 <u>각호</u>의 사업을 위하여 <u>이를 사용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u>임차보증금</u> 지원사업 3. <u>기계기구</u>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 및 <u>대체소요자금</u> 4. (생 략) 5. 경쟁력강화를 위한 <u>연구개발 소 요자금</u> 지원사업 6.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u>소요되는</u> 연계 운전자금 지원사업 7.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해 <u>소요되는</u> 운전자금 지원사업 8. <u>기타</u>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 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p>② <u>기금중</u>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u>이를 사용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 략) 3. <u>기타</u> 시장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③ <u>기금중</u>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p>	<p>----- -----<u>각 호</u>----- ----- <u>사용할</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u>임차(賃借)보증금</u> ----- 3. <u>기계기구</u> 등 ----- ----- <u>대체에 드는 자금</u> 4. (현행과 같음) 5. ----- <u>연구개발에 드는 자금</u> ----- 6. ----- <u>드는</u> ----- 7. ----- <u>위한</u> ----- 8. <u>그 밖에</u> ----- -----<u>하여</u> ----- ----- <p>② <u>기금 중</u>----- ----- <u>사용할</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 <p>③ <u>기금 중</u>-----</p>

현 행	개 정 안
<p>원자금은 다음 <u>각호</u>의 사업을 위하여 <u>이를 사용할 수 있다.</u></p> <p>1. ~ 4. (생 략)</p> <p>5. <u>기타</u> 지역특화산업을 위하여 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④ <u>기금중</u>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은 다음 <u>각 호</u>의 사업을 위하여 <u>이를 사용할 수 있다.</u></p> <p>1. ~ 2. (생 략)</p> <p>⑤ <u>기금중</u> 기업진흥원 지원자금은 다음 <u>각호</u>의 사업을 위하여 <u>이를 사용할 수 있다.</u></p> <p>1. ~ 3. (생 략)</p> <p>4. <u>기타</u> 기업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u>필요하다고인정하는</u> 사업</p> <p>⑥ <u>기금중</u>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은 다음 <u>각호</u>의 사업을 위하여 <u>이를 사용할 수 있다.</u></p> <p>1. (생 략)</p> <p>2. <u>기타</u>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⑦ <u>기금 중</u>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u>각 호</u>의</p>	<p>----- <u>각 호</u>-----</p> <p>---- <u>사용할</u>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p> <p>-----</p> <p>④ <u>기금 중</u>-----</p> <p>-----</p> <p><u>사용할</u>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⑤ <u>기금 중</u>-----</p> <p>----- <u>각 호</u>-----</p> <p><u>사용할</u>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p> <p>-----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p> <p>⑥ <u>기금 중</u>-----</p> <p>----- <u>각 호</u>-----</p> <p><u>사용할</u> -----.</p> <p>1. (현행과 같음)</p> <p>2. <u>그 밖에</u>-----</p> <p>-----</p> <p>⑦ -----</p> <p>-----</p>

현행	개정안
<p>사업을 위하여 <u>이를 사용할 수 있다.</u></p> <p>1.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p> <p>2. (생략)</p> <p>⑧ (생략)</p> <p>⑨ 도지사는 <u>제1항부터 제7항 각호</u>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u>단체등</u>에 대하여 <u>기금에서</u> 출연금, 보조금, 이자 차액보전 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p> <p>⑩ <u>제1항부터 제9항 각호</u>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 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 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u>이를 공고하여야</u></p>	<p>----- <u>사용할</u> -.</p> <p>1.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2조의2에 따른-----</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⑧ (현행과 같음)</p> <p>⑨ ----- <u>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각 호</u> -----</p> <p>-----</p> <p>-----</p> <p>----- <u>단체 등</u>----- <u>기금에서</u></p> <p>-----</p> <p>-----</p> <p>-----</p> <p>-----</p> <p>⑩ <u>제1항부터 제9항까지 각 호</u> -----</p> <p>-----</p> <p>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p> <p>-----</p> <p>-----</p> <p>-----</p> <p>-----</p> <p>----- <u>공고하여야</u></p>

현 행	개 정 안
<p>한다.</p> <p>제12조(용자대상자의 선정) ① 도지사는 <u>제11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를 거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용자대상 업체 및 용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지원·결정해야하는 경우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한다.</p> <p>제12조(용자대상자의 선정) ---- 제11조에 따른----- 경우에는 ----- <u>적격 여부를</u> <u>검토 후 제13조에 따른</u> ----- <u>마친 후</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p> <p>1. ~ 2.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u>각1</u> 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 략)</p> <p>④ 위원은 다음 <u>각호의 자로</u>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u>자로</u> 한다.</p> <p>1. ~ 3. (생 략)</p>	<p>제13조(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u>각 1</u> 명-----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각 호</u>— <u>사람으로</u>---- -----<u>사</u> <u>람으로</u> ----.</p> <p>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4. 충청북도의회 <u>산업경제위원회</u> 위 원 1명</p> <p>5. ~ 7. (생 략)</p> <p>8. <u>기타</u> 도지사가 위촉하는 <u>자</u></p> <p>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u>할 수 있다.</p> <p>⑥ 도지사는 제9조에 <u>의한</u>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별 용자심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4. ----- <u>의원 1명</u></p> <p>5. ~ 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에</u> ----- <u>사람</u></p> <p>⑤ ----- ----- . 단, 제13조4항8호에 해 당하는 사람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 <u>따른</u> ----- ----- ----- ----- .</p> <p>⑦ ----- <u>그 밖에</u>----- .</p>
<p>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p> <p>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u>기하기</u> <u>위해</u>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p> <p>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u>의해</u>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p> <p>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 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u>해촉</u>될 수 있다.</p>	<p>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u>도모</u> <u>하기 위하여</u> ----- ----- .</p> <p>② ----- <u>따라</u> ----- .</p> <p>③ ----- ----- ----- <u>위촉해제</u>----- .</p>

현행	개정안
<p>제15조(사후관리) ① (생략)</p> <p>②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u>허위에 의하여</u>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u>환수</u>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5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거짓으로</u> ----- ----- ----- <u>환수</u> (還收) -----.</p>
<p>제16조(<u>보고등</u>) ①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u>기관등</u>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6조(<u>보고 등</u>) ① ----- --- <u>기관 등</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u>매 회계연도마다</u>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u>매 회계연도마다</u>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 <u>회계연도마다</u>----- ----- -----.</p> <p>② ----- <u>제1항에 따른</u> ----- ----- <u>회계연도마다</u>----- -----.</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전문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u>중소기업진흥공단등</u>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 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8조(전문기관의 협조) ① ---- <u>중소기업진흥공단 등</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생략)</p> <p>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u>」이 정하는 바에 <u>의한다</u>.</p>	<p>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u>----- <u>따른다</u>.</p>

관련법령 발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제4조의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조합(이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4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어야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 ④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펀드에 출자하기 위함

2. 비용 발생 요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으로 하되, 향후 추가 펀드조성 시에는 증액예상

다. 추 계 결 과 : 약 50억원 정도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세 출	5,000,000	3,000,000	2,000,000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000,000	3,000,000	2,000,000	0	0	0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